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895호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저소음 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 방법과 관련한 국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반영하고, 오탈자, 인용 조문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시험장소 요건 확대(안 별표 1의 제42호의3)
- 나. 오탈자, 인용조문 등 수정(안 별표 1의 제22호, 제38호, 제56호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8.14.(월)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자동차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

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정보>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현 행	개 정 안	의 건

나. 보내실 곳

- 1) 일반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
(우편번호 30103)
- 2) 전화/팩스: 044-201-3850, 3853 / 044-201-5584
- 3) 이메일: herdong1928@korea.kr